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31.

발의자 : 신동근 · 소병훈 · 김현권

서영교 · 오영훈 · 민홍철

윤일규 · 서형수 · 이동섭

박찬대 · 이철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,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.

이에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 신설).

##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자살실태조사) ① · ②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자살실태조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